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 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7조제3항 신설)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사항의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 조제2항, <u>제29조제3항 및 제30</u> <u>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u>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 ----- ----- <u>제29조제3항</u>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u> <u>서비스 품질관리 업무</u>	<u><삭 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u> <u>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u>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사회</u> <u>서비스원에 위탁한다.</u>
	1. <u>법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사</u> <u>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u> <u>정보 공개</u>
	2. <u>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u> <u>서비스 품질관리 업무</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01